

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3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위생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2. 28.(수)
- 회부일자: 2024. 2. 28.(수)
- 검토기간: 2024. 2. 28.(수) ~ 3. 6.(수)

2. 개정이유

-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어,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 변경
- 나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)
- 라.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)
- 마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5조)
- 바.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사.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, 신설(안 제7조~제8조)

4. 검토의견

-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 및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어린이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달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기관은 모두 322개소에 달하고 있으며

달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관리급식소 현황

구 분		어린이집	유치원	아동복지시설	청소년 시설 등
계	322	234	48	36	4
일반회원	281	221	20	36	4
기본회원	41	13	28	0	0

<참 고>

- * 일반회원: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시설(등록의무화 대상)
- * 기본회원: 영양사가 있거나 현원 100인 이상 시설(등록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중 센터에서 자율 관리)
 - 어린이집 13(국공립 1, 사회복지법인 3, 법인·단체 1, 민간 8), 유치원 28(사립 24, 병설 4)
- * 아동복지시설: 지역아동센터 32, 공동생활가정 2, 다함께돌봄센터 2
- * 청소년 시설 등: 청소년복지시설 2(청소년쉼터), 청소년활동시설 2(청소년수련관 1, 청소년문화의집 1)

- 전문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던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·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가 소홀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라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식생활 개선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
- 두 센터의 업무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센터 조직구성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,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) 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· 도지사가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·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② 삭제 <2023. 8. 8.>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·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
2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도
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
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